

의안번호	제 157 호
의 결 연 월 일	2015년 4 월 30일 (제 339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4월 1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연월일 : 2015년 4월 13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 신규 위임사무의 반영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권한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및 조문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제명 띄어쓰기 반영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 조문 중 “제○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조에 따라”로 개정

□ 권한 위임사무 개정(안 별표)

○ 신 설 : 9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 (경제정책과) 계량에 관한 사무(5건)

<사무처리 효율화를 위한 위임사무 신설>

-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과태료 부과징수 등(2건)
- (교통물류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1건)

<국가사무 지방이양 : 국가사무(규칙) → 시도사무(조례)>

- (산림복지과)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1건)

○ 삭 제 : 6건

<사무이양 : 시도사무(조례) → 시군사무>

- (보건정책과)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2건)
- (산림복지과) 종·묘생산업 등록 등(2건), 간선임도 설치계획(1건)

<사무폐지>

- (도 로 과)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1건)

○ 근거법조항 개정에 따른 정비 : 33건

- (경제정책과) 계량에 관한 사무(6건)
- (도 로 과) 도로관리에 관한 사무(25건)
- (교통물류과)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2건)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0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지휘 감독하고”를 “지휘·감독하고”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로 “중지”를 “정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세 정 과	1	· 도세 징수유예	지방세기본법 제80조
	2	· 도세 기한의 연장	같은 법 제26조
	3	· 도세 결손처분	같은 법 제96조
	4	·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회 계 과	1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협의 사항에 한함)	
복 지 정 책 과	1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및 허가 (단, 목적·명칭·주사무소·목적사업 및 기본재산 변경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2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단, 해임명령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 및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4	· 재해구호에 대한 다음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밖의 생활 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보 건 정 책 과	1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식 의 약 안 전 과	1	·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12조
	2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 재교부 (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3	·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마약류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4	· 사고마약류 발생 및 처리사항 보고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5	·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신고 양도승인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6	· 마약의 소매 보고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7	· 행정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8	· 청문(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5조
	9	· 과징금 부과(징수)처분(마약류 도매업자 제외)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10	·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경 제 정 책 과	1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경 제 정 책 과	2	·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	
		가.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나.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 사업에 관한 권한	
		가. 사업(변경) 허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나.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같은 법 제4조
		다. 사업휴지 등의 신고	같은 법 제7조
		라. 지위승계 신고	같은 법 제8조
		마. 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제9조
		바. 과징금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조
	사.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2조	
	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해임 요구 등	같은 법 제16조	
	자. 청문	같은 법 제40조	
	차.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52조	
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같은 법 제34조	
5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같은 법 제39조제6항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78조제4항	
6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31조제1항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78조제4항	
7	·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6조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같은 법 제57조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19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경제 정책 과	8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9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 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나.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다. 보고 및 조사 등 라. 개선명령 마.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아.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자.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차.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카.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정정요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2조, 제 55조, 제56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10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 공산품,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공산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1조	
	11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선·수거·과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8조	
	12	· 승강기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나.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다.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라.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부칙 <제8848호,2008.1.17> 제2항 같은 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제3항 같은 법 제28조	
	투자 유치 과	1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
		3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농업정책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정비사업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나. 생산기반정비사업중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유기농산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농어촌정비법 제9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받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나. 소규모(10ha 미만) 개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농어촌정비법 제26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제17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축산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축장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보호법 제15조 동물보호법 제17조 동물보호법 제18조 동물보호법 제19조 동물보호법 제20조 동물보호법 제21조 동물보호법 제22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산림 녹지과	1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산림보호법 제24조
	2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같은 법 제13조
	3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다.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8조
	4	·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5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6	· 산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7	·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예술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p>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1호</p> <p>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p>
건축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 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p>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4항, 제20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p> <p>같은 법 제21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p> <p>같은 법 제24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p> <p>같은 법 제29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1조</p> <p>같은 법 제3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7조</p>
건축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단,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p>주택법 제24조</p> <p>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p>
건축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p>주택법 제16조</p>
군발전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p>
군발전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p>같은 법 제30조, 제50조</p>
군발전포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마.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바.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사.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아. 공동구 자. 공공공지 차. 수도공급설비 카. 전기공급설비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조</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균형발전과</p>		<p>타. 가스공급설비 파. 방송·통신시설 하. 시장 거. 열공급설비 너.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더. 운동장 러.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머. 도서관 버. 문화시설 서. 연구시설 어. 사회복지시설 저. 공공직업훈련시설 처. 청소년 수련시설 커. 유수지 터. 방화설비 퍼. 저수지(댐 제외) 허. 방풍설비 고. 방수설비 노. 사방설비 도. 방조설비 로. 하수도 모. 도축장 보. 장례식장 소. 종합의료시설 오. 폐차장 조.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초. 폐기물처리시설 코. 수질오염방지시설 토. 하천(소하천에 한함) 포.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 화장시설 누. 봉안시설 두. 자연장지 루. 공동묘지</p>	
	4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5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6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33조, 제48조, 제53조
	7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8	·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균형발전과	9	·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1조
	10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1	· 행정청이 아닌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도시개발법 제4조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	도시개발법 제9조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19조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20조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같은 법 제26조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같은 법 제58조
		아.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같은 법 제66조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같은 법 제68조
	12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13조	
	나. 선수금 승인	같은 법 제25조	
	다. 준공검사	같은 법 제50조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같은 법 제51조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같은 법 제52조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53조	
	13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체 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6조의2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도로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원상회복 바. 변상금의 징수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법 제61조, 91조 같은 법 제62조제2항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03조 같은 법 제117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도로법 제40조제3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제40조제4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도로법 제106조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다.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라.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마. 도로에 관한 조사 바.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도로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제69조, 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도로법 제52조제3항 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교통 물류과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7조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14조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같은 법 제27조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같은 법 제28조
	2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자동차등록령 제31조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같은 법 제3조, 제5조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같은 법 제6조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
		마. 등록번호표의 반납	같은 법 제9조
		바.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재김 명령등	같은 법 제11조
3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같은 법 제8조의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	
	가. 승용·승합자동차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같은 법 제34조의2	
4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같은 법 제3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제83조	
5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 자동차의 사용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6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같은 법 제89조	
	가.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나. 공사시행의 인가 등	같은 법 제38조	
	다. 공사의 완성	같은 법 제38조제4항	
	라. 사용개시	같은 법 제39조	
	마. 사용약관 인가	같은 법 제40조	
	7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물 류 과		바.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사.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 시정명령 아. 터미널의 관리 자. 위치·규모·구조 설비의 변경 차. 사업개선 명령 카. 사용명령 타.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파. 면허의 취소 하. 과징금 처분 거. 청문 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더.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러. 정관변경 등의 명령 머. 재정지원, 조합감독 버. 공사시행인가, 시설확인 시 관계 행정기관장 간의 협의 및 통보 8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나.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다.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9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차. 청문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같은 법 제47조제3항·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 제35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치 수 방 재 과	1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 · 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3	·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5	·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라.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마.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및 착수 신고 수리 바. 인가내용 고시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7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인가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하천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p>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p> <p>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p> <p>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p> <p>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p> <p>자. 스케이트장·유선장 또는 도선장을 설치하는 행위</p> <p>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p> <p>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p>	<p>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p> <p>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p>
	10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하천법 제33조제6항
	11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 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및 검사의 퇴·준공검사·공사비에치	같은 법 제33조제8항
	12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3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4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5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검사	같은 법 제90조
	16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같은 법 제69조
	17	·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18	·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9	· 지방하천의 하천예정지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하천법 제38조제1항
		<p>가. 공작물의 신축·개축</p> <p>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p> <p>다. 죽목의 식재</p>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0	· 지방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변경 인가· 고시· 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하천법 제38조제4항
	21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22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 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23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조사· 통지	같은 법 제76조
	24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 물건 등의 사용· 수용	같은 법 제78조
	25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6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같은 법 제89조
	27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 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8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9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30	· 보상금액의 산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31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2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3	· 보상금의 공탁	같은 법 제8조
	34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5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36	· 도유재산 용도폐지	같은 법 제11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 과	1	• 대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및 고시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도에서 설치하는 대기측정망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 제5조
	2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같은 법 제17조
	3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다음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4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5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제7항
	6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7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8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4항
	9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중 수질3종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법 38조의3제1항 제2항
	10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1·2종 사업장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 범위에 포함)	같은 법 제68조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1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2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다.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사.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아.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자. 폐기물 재활용신고 수리 차.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카. 청문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파.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승인 및 통보 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1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나.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아.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고형연료제품 제조자의 공급계획서 및 공급 변경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용연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고형 연료제품 사용신고서 접수에 관한 사무 다.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 시 통보서 접수에 관한 사무 라.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고형연료 제품 사용을 중지한 자가 다시 사용하려 할 경우, 시설의 개선내역, 다이옥신 검사결과, 고형연료 제품 사용계획서 접수에 관한 사무 	자원의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0조의6 별표 8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다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변경 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나. 유독물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수시검사, 안전 진단 명령 다. 개선명령 라. 폐업 등 신고의 수리 및 조치명령 마.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바. 권리·의무 승계의 수리 사.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 신고의 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 자체방재계획 제출의 수리 자.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등 차. 과징금의 부과·징수 카. 청문의 실시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p>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2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26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제30조</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9조</p> <p>같은 법 제50조</p> <p>같은 법 제63조</p>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대상 기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다.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라. 오염기기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명령 	<p>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3조제2항</p> <p>같은 법 제23조제3항</p> <p>같은 법 제24조의2</p> <p>같은 법 제25조제3항</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질 관 리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항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처리제 제조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는물관리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7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3항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먹는물관리법 제42조	

[별표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 무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 내 전보권 (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7의2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을 위임) · 별정직·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3조의2

[별표 3]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3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대응구조 구급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 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 시험 다. 위험물제조소등의 승계신고의 수리 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명령 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 정지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제11조 같은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2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바. 등록취소 청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법 제6조 같은법 제7조 같은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 같은법 제32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제16조 같은법 제17조 같은법 제19조 같은법 제35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다.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라.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마. 과징금 처분 바. 등록취소 청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법 제31조 같은법 제32조 같은법 제34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제44조제2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록 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다. 등록의 취소와 업무정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법 제16조제3항 같은법 제16조제5항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4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총무과	1	·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도립 대학총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 5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자치 연수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6급이하 지방공무원(지도사·연구사 포함)의 원내 전보권 · 5급 상당 지방연구관·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연구소장은 제외)	농업 기술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도로관리 사업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6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소내 전보권	산림환경 연구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7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소내 전보권	축산위생 연구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소내 전보권	농산 사업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9	·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0	· 6급이하 지방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소내 전보권	내수면 연구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1	·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북부 출장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12	·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남부 출장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5]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7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총 무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권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단, 개방형 직위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소방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u>지휘 감독하고</u> 그 처분이 <u>위법 또는 부당하다고</u>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u>중지</u>시킬 수 있다.</p> <p>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중 인사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p>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한다.</p>	<p><u>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u></p> <p>제1조(목적) <u>제104조에 따라</u></p> <p>제3조(감독) ① 제2조에 따라 <u>지휘·감독하고</u> <u>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u> <u>정지</u>..... </p> <p>② 제2조에 따라</p> <p>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 <u>조례에 따라</u></p>

관련법령 발췌

공통사항

□ 지방자치법

-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보건정책과

□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 반기(半期)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 제6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와 제7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경제정책과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단위"라 한다)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단속하고, 비법정단위를 사용한 자에게는 법정단위의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정단위의 표시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7조(계량기 제조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또는 계량증명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계량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계량기 수리업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 및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은 자

(이하 "자체수리자"라 한다)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계량기의 수리에 필요한 자체 시설 및 검사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자체수리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수입업의 신고) ① 계량기의 수입을 업(이하 "계량기 수입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량기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2조(폐업 등의 신고) ① 제조업자등은 사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업종에 대하여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지정 또는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조업자등은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및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제조업자등 중 자체수리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30조(정기검사) ①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 중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검정 대상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31조(수시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제32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등) ①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가 제작 및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정기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사요원, 검사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3조(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이하 "자체정기검사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가 자체적으로 검사한 계량기에 대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제34조(검사증인의 표시 등) ① 시·도지사 및 자체정기검사사업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검사증인(檢査證印)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2조(정량표시 위반의 시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량표시 명령 또는 표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9조(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법정단위의 단속현황, 계량기 제조업 등록현황, 형식승인 및 검정 통계, 교정대상 측정기기 교정이력, 적합성 확인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 7. (생략)

제52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가 계량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검정증인 또는 검사증인 표시를 제거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55조(과징금)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63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가 등록하거나 지정받거나 신고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업자, 신고업자 및 지정기관 또는 지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필요한 신청방법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청문) ① (생략)

1. ~ 5.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3조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1.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투자유치과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같은 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⑤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양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3(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산림복지과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가를 선정하고 독립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립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 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종묘생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④ ~ ⑤ (생략)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임도설치계획 작성) 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서에서 관할하는 산림이 포함되거나 연접 또는 인접지역에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산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임도설치계획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생략)

교통물류과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계약의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의 체결·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도 로 과

□ 도로법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④ (생략)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7. (생략)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 ~ ④ (생략)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11. (생략)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